

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판 결

사 건 2025가단14518 손해배상(지)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
담당변호사 김주원, 오수진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6. 5. 14.
판 결 선 고 2026. 5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27.부터 2026. 3. 24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2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


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및 인용범위

가. 피고가 2023. 11. 13.부터 2024. 1. 27.까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'C'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의 사설서버인 'D'를 개설하여 불특정 이용자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'C'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4항, 제1항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.

나.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, 위 서버 개설기간 및 침해의 정도, 원고가 주장하는 추정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30,000,000원으로 정하고,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의정